●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 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개정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84. 7 .16)

대통령령 제11,471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된 지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예정지구면적의 축소
2. 예정지구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중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관할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종전의 제2항 내지 제4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제7조 제1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6호를 삭제한다.

시행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개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6.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제8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제8조 제3항 본문중 "관계시장 또는 군수"를 "관계시장·군수"로, 동항 단서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

군수"로 하고, 동조 제6항제7호중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를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로 하며, 동조 제8항중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관할시장·군수"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구 지적대조도
7.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 건설부장관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를 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택지공급의 승인) 시행자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공급 승인신청서에 택지의 용도별·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의 대상자 또는 대상자선정법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결정방법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한다. 이하 "국민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 특정 시설용지인 경우와 기타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2.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3. 예정지구안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유되는 최소범위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당해 토지에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5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예정지구지정 1년 이전부터 소유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택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관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서 구비서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예정지구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② 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 및 정부조직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③ 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한다.

◈ **宅地開發促進法施行令 改正理由**

공영개발방식에 의하여 개발한 택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고 택지의 공급가격을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며,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택지의 우선공급대상에 국민주택건설용지 외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가함(령 제13조의2 제1항).

나. 실수요자에게 적정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의 공급방법을 추천에 의한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공동주택건설용지가 아닌 택지(시행자가 지가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함(령 제13조의2 제2항).

다. 택지를 분양 또는 임대함에 있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와 기타 시행자가 경쟁의 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령 제13조의2 제3항)

라. 택지공급의 가격을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13조의2 제4항).

〈법제처 제공〉

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개정령(84. 8. 2)

대통령령 제11,481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중 "문교부령으로 정하는"을 "문교부장관이 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0항중 "문교부령으로 정한다"를 "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 고등기술학교·실업계고등학교(실업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별표5에 의한 실험·실습실을 두고, 실험·실습실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령으로 정한다"를 "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문교부령으로 정하는"을 "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5조중 "문교부령이"를 "문교부장관이"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설립인가시의 시설 기준) 학교의 설립인가청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그 학교는 적어도 제2조·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또는 원사대지, 체육장(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말하되,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희실을 유원장과 겸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급수시설이 확보되고,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습지, 교사(유치원의 원사를 포함한다),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 교구의 3분의1 이상이 확보 또는 건축되어야 하며, 남은 시설은 개교후 2년이내에 완성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교구등 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체육장과 원유장에 두어야 할 체육시설의 기준, 보통교실·특별교실·시청각교실 및 그 준비실과 도서실에 비치하여야 할 설비의 종목과 수량, 학과 또는 교과별로 두어야 할 교구의 종목 및 그 기준, 고등기술학교(실업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실험실습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각종학교가 이 영에서 정한것 외에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 제5조제10항,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의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고등기술학교·실업계고등학교 (실업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5〕

실업계학교실험·실습실기준

1. 농업에 관한 학과

번호	학과명	실명	수용인원	면적(m²)		비고
				필수	권장	
0	공동	0－1 농업기계실	60	360		농업기계과설치학교 제외
		0－2 농업공작실	60	360		
		0－3 농축산가공실	60	280		농산제조과축산과설치학교제외
		0－4 영농설계실	60	160		
		0－5 재배실습실	60	200		
		0－6 사육실습실	60	200		
		0－7 종합축사		360		축산과설치학교 제외
		0－8 온 실		160		원예과설치학교 제외
		0－9 농구실		200		
		0－10 농업창고		70		
		0－11 유류고		30		
		0－12 실습포장				필수
1	농업과	1－1 잠 실	60	40		잠업과설치학교 제외
		1－2 건조실		100		
		1－3 농장관리실		100		
		1－4 농장물저장실		130		
2	임업과	2－1 측량기구 및 제도실	60	200		농업토목과설치학교 제외
		2－2 연습림관리실		60		
		2－3 연습림				필수
3	축산과	3－1 유우사		330		
		3－2 육우사		100		
		3－3 돈 사		200		
		3－4 가금사		330		
		3－5 축산가공실	60	330		농산제조과에 준함
		3－6 사료창고		150		
		3－7 사일로우		160		
		3－8 건초사		180		
		3－9 축산관리실		100		
		3－10 초지 및 방목장				권장
4	원예과	4－1 온 실		200		
		4－2 무균배양실		20		
		4－3 저온저장고		60		
		4－4 실습포장관리실		100		
		4－5 마스트철재하우스		100		
		4－6 플라스틱하우스		200		
		4－7 과수원				필수
5	잠업과	5－1 잠 실	60	200		
		5－2 뽕 밭	60			필수
6	농업토목과	6－1 측량·제도실	60	200		
		6－2 토목재료실험실	60	280		

7	농산제조과	7 – 1 농산가공실	60	330		
		7 – 2 축산가공실	60	330		
		7 – 3 응용미생물실	60	330		
		7 – 4 분석실험실	60	330		
8	농업기계과	8 – 1 농용원동기실	60	160		
		8 – 2 농용트랙터및부속작업기실	60	320		
		8 – 3 농작업기실	60	160		
		8 – 4 농업기계정비실	60	320		
		8 – 5 제도실	60	160		
		8 – 6 농업기계훈련장				필 수
9	농촌지도	9 – 1 농촌지도 실습실	60	210		
10	농업가정과	10 – 1 조리실습실	60	130		
		10 – 2 재봉실습실	60	140		
		10 – 3 생활관리실	60	70		

※ 실습포장은 학교특성 및 지역실정에 따라 실습에 지장이 없는 면적을 확보한다.

2. 공업에 관한 학과

번호	과 목 명	실 명	수용면적(m^2)			비 고
			인 원	필 수	권 장	
0	공 동	0 – 1 제도실	60	250		건축과제외
1	기계조립	1 – 1 기계조립실	30	200		
2	기계공작	2 – 1 기계공작실	30	880		
3	판금·용접	3 – 1 판금·용접실	30	400		
4	배관·제관	4 – 1 배관·제관실	30	400		
5	주 조	5 – 1 주조실습실	30	400		
6	금속재료	6 – 1 금속재료실	30	400		
7	제선·제강	7 – 1 제선·제강실	30	400		
8	비철·제련	8 – 1 비철제련실습실	30	400		
9	탐 광	9 – 1 탐광실습실	30	400		
10	채 광	10 – 1 채광실습실	30	360		
11	선 광	11 – 1 선광실습실	30	400		
12	전기기계	12 – 1 전기기계실습실	30	400		
13	전기공사	13 – 1 전자공사실습실	30	320		
14	전력·전자	14 – 1 전기·전자·통신기초실습실	30	240		
		14 – 2 전력·전자실습소	30	240		
15	전자회로	15 – 1 전자회로실습실	30	260		
16	전자응용	16 – 1 전자응용실습실	30	280		
17	무선공학	17 – 1 무선공학실습실	30	400		
18	유선공학	18 – 1 유선공학실습실	30	400		
19	전자계산기구조	19 – 1 전자계산기구조실습실	30	160		
20	정보기술	20 – 1 정보기술실습실	30	470		
21	측 량	21 – 1 측량실습실	30	100		
22	토목재료	22 – 1 토목재료시험실	30	210		
23	토질·수리	23 – 1 토질시험실	30	180		
		23 – 2 수리실험실	30	120		
24	건축 1, 2, 3	24 – 1 목공실습실	30	450		
		24 – 2 건축시공실습실	30	250		
		24 – 3 건축재료및구조시험실	30	250		
		24 – 4 건축계획및의장실습실	30	250		
		24 – 5 건축설계제도실	60	250		
25	디자인 1, 2, 3	25 – 1 소묘실습실	30	90		
		25 – 2 디자인 1 실	30	280		
		25 – 3 디자인 2 실	30	280		
		25 – 4 디자인 3 실	30	280		
26	제조화학	26 – 1 제조화학실습실	30	180		
27	화공계측	27 – 1 화공계측실습실	30	180		

28	단위조작	28－1 단위조작실습실	30	180		
29	요업제조	29－1 요업제조실습실	30	180		
30	요업계측	30－1 요업계측실습실	30	180		
31	식품공업	31－1 식품기초실습실	30	180		
		31－2 식품제조실습실	30	180		
		31－3 식품가공실습실	30	360		
32	편 직	32－1 편성·제직실습실	30	300		
33	방 직	33－1 방적·방사·가공실습실	30	450		
34	염 색	34－1 염색 및 섬유재료실습실	30	300		
35	인쇄사진	35－1 인쇄사진실습실	30	440		
36	평판인쇄	36－1 평판사진실습실	30	330		
37	볼록판인쇄	37－1 볼록판인쇄실습실	30	330		
38	기관정비	38－1 기관정비실습실	30	300		
39	새시정비	39－1 새시정비실습실	30	300		
40	중장비정비	40－1 중장비정비실습실	30	300		
41	선박현도	41－1 선박현도실습실	30	400		
42	선체조립	42－1 선체조립실습실	30	400		
43	선박의 장	43－1 선박의장실습실	30	400		
44	항공기기관	44－1 항공기기관실습실	30	400		
45	항공기기체	45－1 항공기기체실습실	30	400		
46	항공기정비	46－1 항공기정비실습실	30	320		
47	철도차량정비	47－1 철도차량정비실습실	30	330		
48	철도운전	48－1 철도운전실습실	30	200		
49	철도보선	49－1 철도보선실습실	30	160		

3. 상업에 관한 학과

번호	학 과 명	실 명	수용인원	면 적(m²)		비 고
				필 수	권 장	
0	공 동	0－1 정보처리실습실(Ⅰ)	30	60		
		0－2 정보처리실습실(Ⅱ)	30	200		정보처리과제외
		0－3 부기실	60	100		
		0－4 타자실(Ⅰ)	60	100		
		0－5 타자실(Ⅱ)	60	100		
1	상업과	1－1 상업계산실	60	100		
		1－2 상업실천실	30	80		
2	회계과	2－1 상업계산실	60	100		
3	무역과	3－1 무역실무실	60	100		
4	정보처리과	4－1 정보처리실습실(Ⅰ)	30	60		
		4－2 정보처리실습실(Ⅲ)	30	200		
5	선택실습	5－1 상품실	60	60		
		5－2 상업미술실	60	100		

4. 수산·해운에 관한 학과

번호	학 과 명	실 명	수용인원	면 적(m²)		비 고
				필 수	권 장	
0	공 동	0－1 실습선				필 수
1	어업과	1－1 어업실습실	60	165		
		1－2 선박운용실습실	60	165		
		1－3 항해실습실	60	130		
		1－4 해양·기상실습실	60	165		
		1－5 해양훈련장비실		100		
2	수산증식과	2－1 수산생물실습실	60	130		
		2－2 수산양식실험실	60	130		
		2－3 수산생물표본실		100		
		2－4 채취선				필 수
3	수산가공과	3－1 수산가공실습실	60	230		
		3－2 냉동·제빙실습실	60	230		

		3－3 식품화학·식품위생 실험실	60	130		
4	항해과	4－1 기상실습실	60	100		
		4－2 항해실습실	60	130		
		4－3 선박운용실습실	60	130		
		4－4 항해계기실습실	60	130		
		4－5 해양훈련장비실		100		어업과 공동사용
5	기관과	5－1 선박기관실습실	60	260		
		5－2 기관공작실습실	60	260		
		5－3 선박전기실습실	60	130		
		5－4 제도실	60	130		
6	통신과	6－1 기초전기전자실습실	60	165		
		6－2 전파통신실습실	60	100		
		6－3 실험무선국	60	100		
		6－4 인쇄통신실습실	60	100		
		6－5 전산실습실	60	100		
		6－6 무선측정실습실	60	160		

5. 가사실업에 관한 학과

번호	실 명	수용인원	면 적(m²)		비 고
			필수	권장	
1	조리실습실	60	210		
2	시 식 실	60	120		
3	재 봉 실	30	165		
4	편 물 실	30	80		
5	수 예 실	60	160		
6	보 육 실	30	165		

비 고:

1. 실험·실습실이라 함은 실험·실습을 위한 건물, 토지, 선박 및 공유수면등 외곽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수용인원이라 함은 각 실험·실습실에서 동시에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3.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는 해당 시설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4. 위 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학과는 교육과정상 이와 유사한 학과의 기준에 준한다.
5. 농업, 상업, 수산·해운에 관한 학과는 설치학과별로 공업, 가사실업에 관한 학과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 과목별로 이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통시설은 학교단위로 갖추어 공동사용한다.
6. 각 시설의 사용시간수가 1주당 30시간(매시간 50분 수업을 말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30시간 까지마다 해당시설의 100퍼센트씩을 가산하여 갖추어야 한다.
7. 각 학교는 위표의 권장시설과 학교의 교육적인 특성 및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별표외의 기타시설도 가능한한 확보하여야 한다.
8. 학교장은 실험·실습실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그 기준범위 내에서 해당시설을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2개이상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다른 학과의 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주당 30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學校施設·設備基準令 改正理由

現在에는 各級學校의 體育場·教室등에 갖추어야 하는 設備등의 基準은 文教部令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文教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도록 하여 이들 基準을 教育內容의 變遷, 새로운 教具 및 機資材의 開發등에 따라 彈力的으로 調整·運營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文教部令으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은 앞으로는 文教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도록 함(令 第3條第6項, 第5條第10項, 第7條第2項 및 第13條第2項).

- ○各級學校의 體育場(幼稚園의 경우에는 遊園場)에 두어야 하는 體育施設의 基準
- ○教室·準備室 또는 圖書室에 비치하여야 할 設備의 種目과 數量
- ○學科 또는 教科별로 두어야 할 教具의 種目과 그 基準
- ○各種學校와 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技術學校· 高等技術學校·特殊學校가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갖추어야 할 施設·設備

나. 文教部令으로 정하던 實業系學校의 施設基準중 實驗·實習室의 面積基準은 이 令에서 정하도록 하고 實驗·實習室에 두어야 할 實驗·實習設備의 基準은 文教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도록 함(令 第6條 및 別表5).

다. 學校設立認可 당시 갖추지 못한 設備등을 종전에는 文教部令으로 정하는 補完期間내에 완성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開校후 2年이내에 완성하도록 함(令 第16條).

〈법제처 제공〉

저압변류기용 계기함 규격 제정(1984. 7. 9) 한국전력공사

저압변류기용 전력량계의 계기함이 함규격의 협소 및 배선불량등으로 계기시험 및 교환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통일하고자 다음과 같이 한국전력공사가 그 규격을 제정하였기에 회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저압변류기부 전력량계를 부설하는 경우 이것을 수납하는 철제 계기함(이하 계기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베이스 : 계기함중 조영물에 부착되는 부분으로 전력량계 및 변류기를 취부하는 부분

카 바 : 계기함중 베이스내에 부착된 전력량계와 변류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닫는 부분

3. 종 류

계기함의 종류는 표 1 과 같다.

종 류	적 용	비 고
단 상	1φ 2W	전력량계×1대, 변류기 ×1대
삼상소형	1φ 3W 또는 3φ 3W	전력량계×1대, 변류기×2대
삼상대형	3φ 4W	전력량계×1대, 변류기× 3 대

4. 구조 및 재료

계기함은 옥외설치형으로 베이스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 2 종(KSD 3503 SB41) 을 사용하여야 하며, 카바의 재질은 베이스의 재질과 같거나 또는 스테인레스판이상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빗물, 진해, 습기등을 방호할 수 있어야 하며, 계기부설 작업이 용이하고 검침이 편리한 내후성이 있는 구조의 것으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4. 1 형상과 치수

(1) 계기함의 주요치수는 표 2 와 같아야 한다.

(단위 : ㎜)

종 류	가 로	세 로	깊 이	검침창	
				가 로	세 로
단 상	450±10	650±10	250±10	150±2	130±2
삼상소형	550±10	850±10	250±10	150±2	130±2
삼상대형	620±10	1,000±10	250±10	150±2	130±2

(2) 변류기부 계기함의 형상은 부도 1 과 같아야 한다.

4. 2 베이스 및 카바

(1) 베이스 재료의 두께는 2.0m/mt, 카바의 두께는 압연강재 제 2 종 2.3m/mt 또는 1.5m/mt스테인레스판 이상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베이스는 모양의 비틀림이 없이 미려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테두리는 ㄱ ㄱ 형으로 구부려야 한다.

(3) 베이스와 카바와의 결합경첩은 외부에서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4) 베이스와 카바와의 사이에는 팩킹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밀착되어 빗물, 진해, 습기등을 방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베이스 내부에는 변류기를 규격별 호환성있게 취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전력량계는 규격별로 호환성있게 취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또는 철판을 가공한 후 12m/mt의 합판을 부도와 같이 취부하여야 한다.

(7) 베이스 내부의 하부측면에는 5.5m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취부볼트 및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봉인장치는 봉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함을 개방할 수 없는 구조로 봉인이 용이하며, 내후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베이스와 카바의 결합경첩은 옥외 장기 사용으로 인한 부식 및 발청이 되어서는 안된다.

4. 3 검침창

카바의 검침창부분은 KSL 2001(보통판유리) 의 두께 3.0㎜(허용 오차±0.3㎜) 투명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유리는 내후성이 있는 고무팩킹으로 밀착하여 빗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리는 쉽게 바꾸어 끼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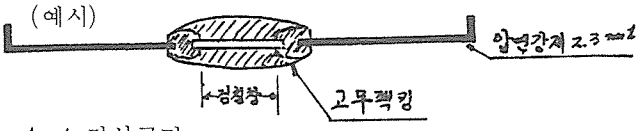

4. 4 전선구멍

전선 인출구멍은 Knockout식으로 베이스 및 측면하부면 각각 2 개소를 펀치하고 전선구멍에 적합한 규격의 인조 고무류등을 구비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당한 방법으로 전선을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5 도장

도장하기 전에 강판표면을 균일하게 다듬은 후 산화피막, 기름, 먼지등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방청도료를 2 회이상 균일하게 도장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회색 (MUNSEL NO. 7.5 BG 6 /1.5) 도장을 2회이상하여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스테인레스를 사용할 경우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4. 6 부속품

완성품에는 다음의 부품을 투명한 비닐 또는 폴리에칠렌제의 포장지에 넣어 동봉하여야 한다.

(1) 인조고무 : 2 개(기타 구조로 전선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 제외)

(2) 전력량계를 취부할 수 있는 나사못 : 25㎜ × 3 개

(3) 변류기를 취부할 수 있는 볼트 및 낫트(변류기수 × 2 개)

5.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다음에 준하여 검수시험을 행한다.

5. 1 검수시험

(1) 외관검사

구조, 치수 및 도장상태등은 4 항의 해당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주수시험

계기함을 사용상태로 취부하고 전면 및 측면 약60° 상방에서 수량을 배분 3㎜정도로 균일하게 강우상태로 1 시간 주수하여 함내에 침수되어서는 안된다.

6. 표 시

계기함의 카바에는 다음 사항을 명료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카바 하단 중앙에는 폭 10㎜의 "위험"문자를 적색으로 표시한다.

7. 포 장

계기함은 크라프트지로 검침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개별포장해서 적당 수량을 한묶음으로 포장한다.

계기함 배선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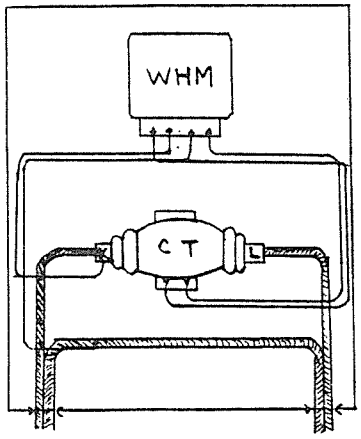

단상2 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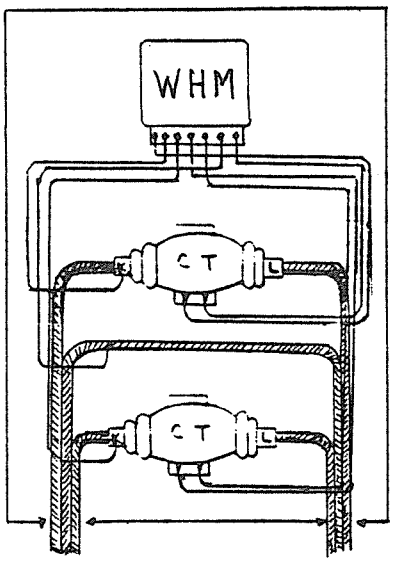

3 상3 선식 및 단상3 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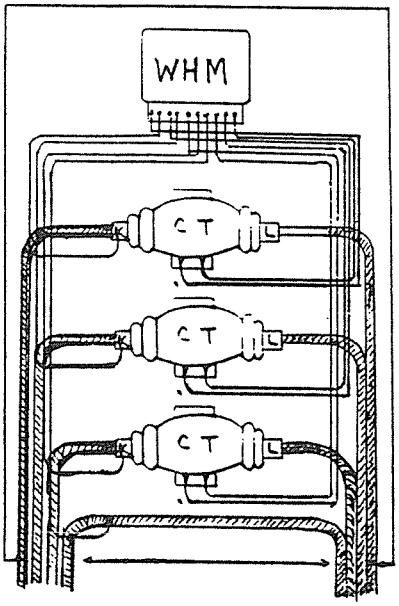

3 상4 선식

단상계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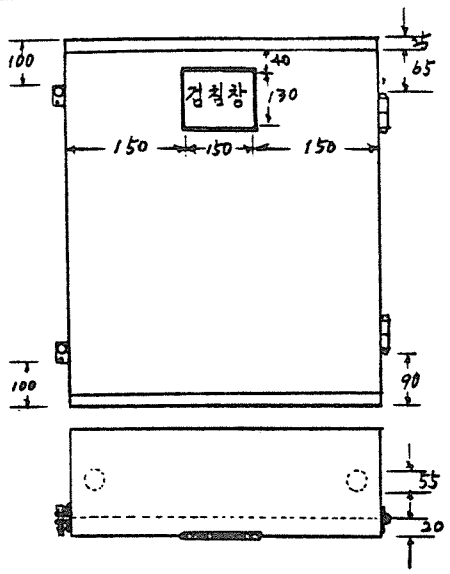

전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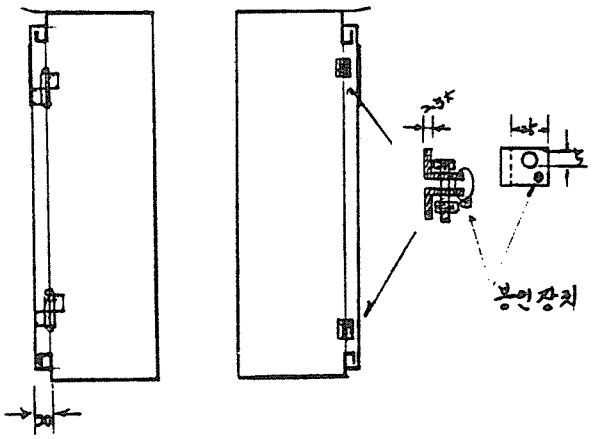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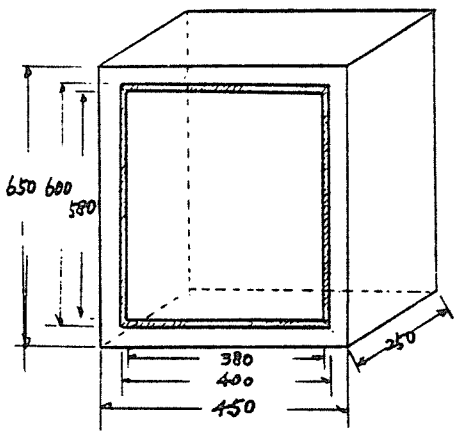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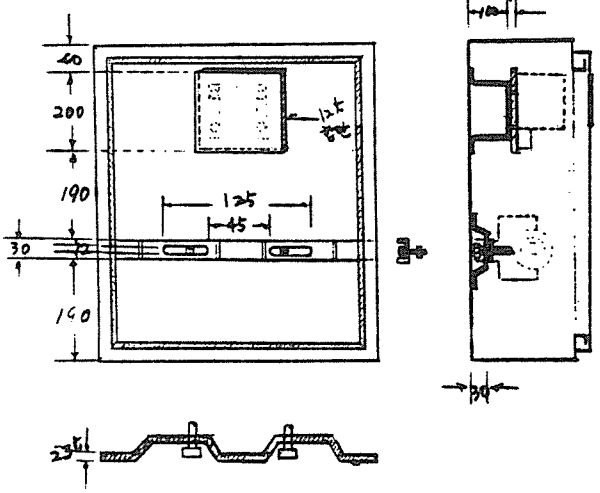

내 부 상 세 도

삼상소형계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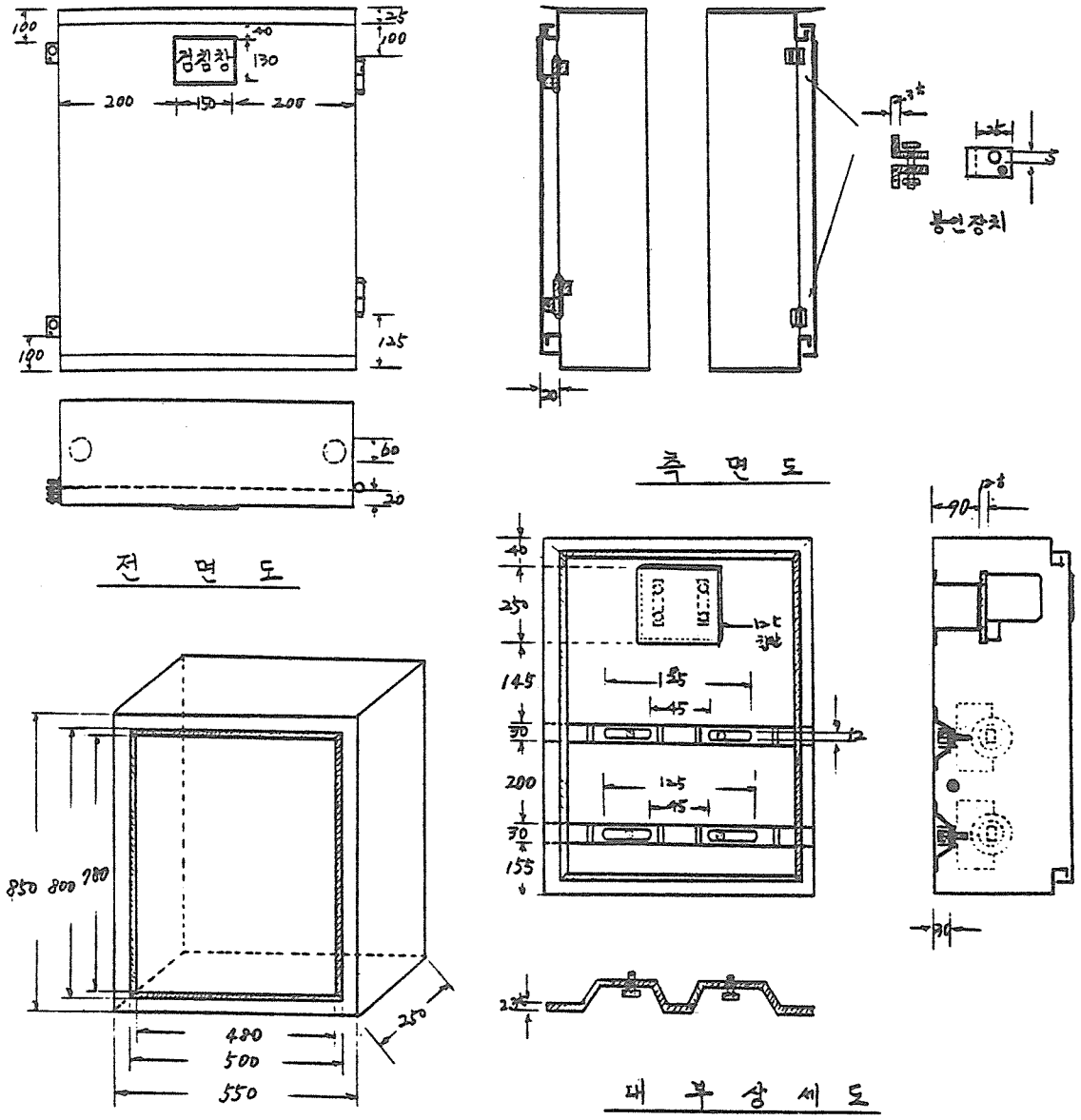

자연형태양열이용
SOLAR ENERGY

다음 자료는 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정부의 탈석유 정책 계획에 의거 자연형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발간된 홍보용 자료를 발췌한 것이므로 회원업무에 참고 바람.

□ 태양에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으로 부터 받는 에너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양이며 또한 이것은 석유, 석탄 및 우라늄과 같은 지하자원과는 달리 계속 사용하여도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에너지원(源)으로 청결하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지도 않으며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의 위험도 없고 폐기물 처리 문제를 일으키는 독성 폐기물도 남기지 않읍니다.

삼상대형계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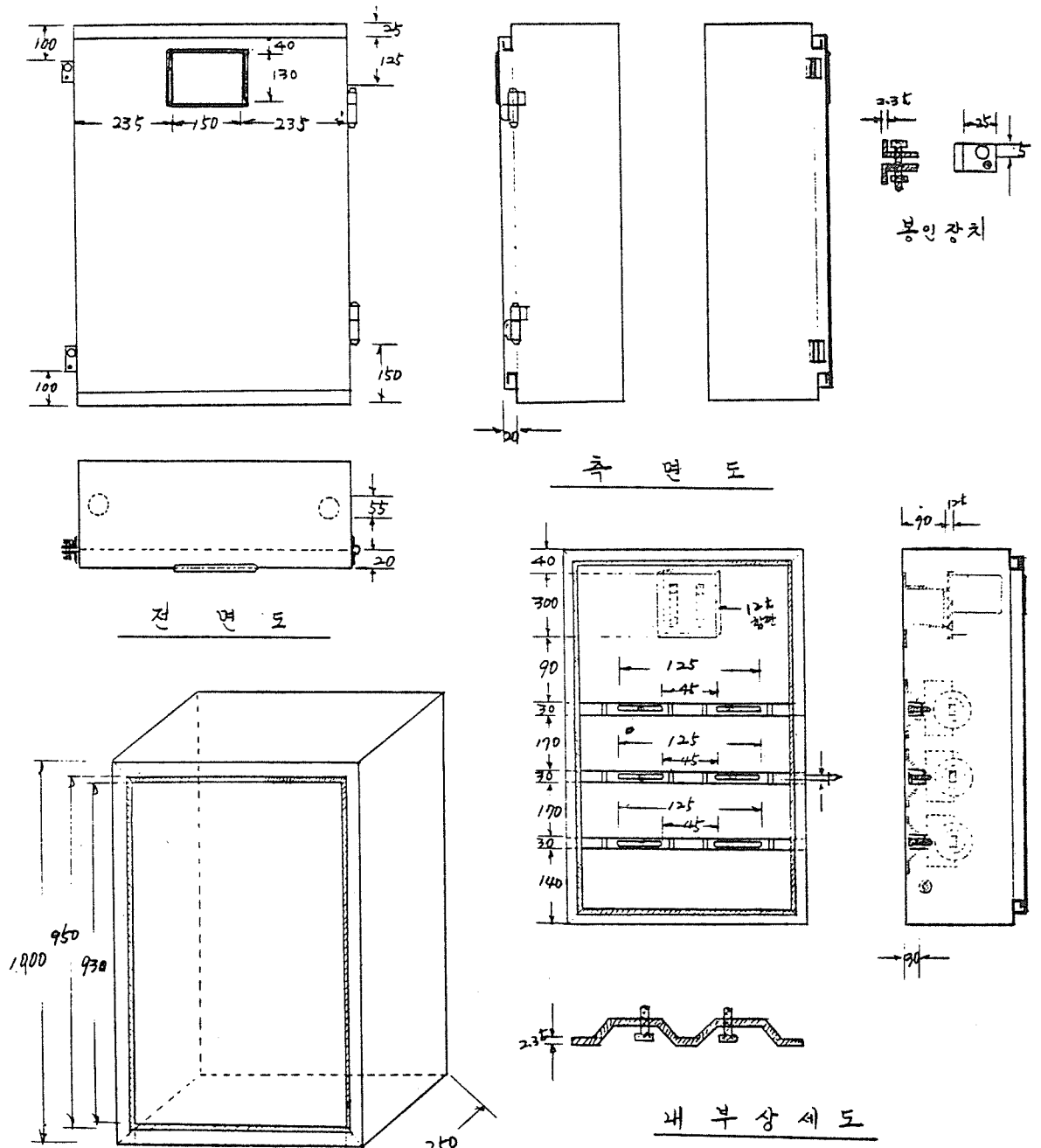

태양에너지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가정의 난방 및 급탕용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바람직한 에너지입니다.

□ 태양에너지 보급

◇세계정세

- 석유매장량의 유한성
- 산유국의 정정불안
- 세계적인 에너지부족 현상
- 석유가의 불안정

◇국내정세

-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75%
- 타 대체에너지이용연구단계
-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증대

□ 태양열이용 급탕시설 보급확대 예상

- 정부의 태양에너지 이용기술 개발촉진
- 태양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융자지원
- 태양열을 간편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급탕시설을 중점 보급

□ 태양에너지이용시설의 시공대책

과거 군소업체들의 난립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태양에너지이용이 마치 효과가 없는것 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정부에서는 태양에너지이용 보급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태양열집열기 제조업 허가제도 실시
- 태양열집열기 형식승인제도 실시
- 태양열집열기 시공업 지정제도 실시
- 태양열집열기 설치 및 시공기준 고시

등을 모두 제도화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태양열이용 급탕시설의 보급도면을 배포하는 한편 보다 더 철저한 시공을 위하여 당공단 시·도지부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도면

(부동액주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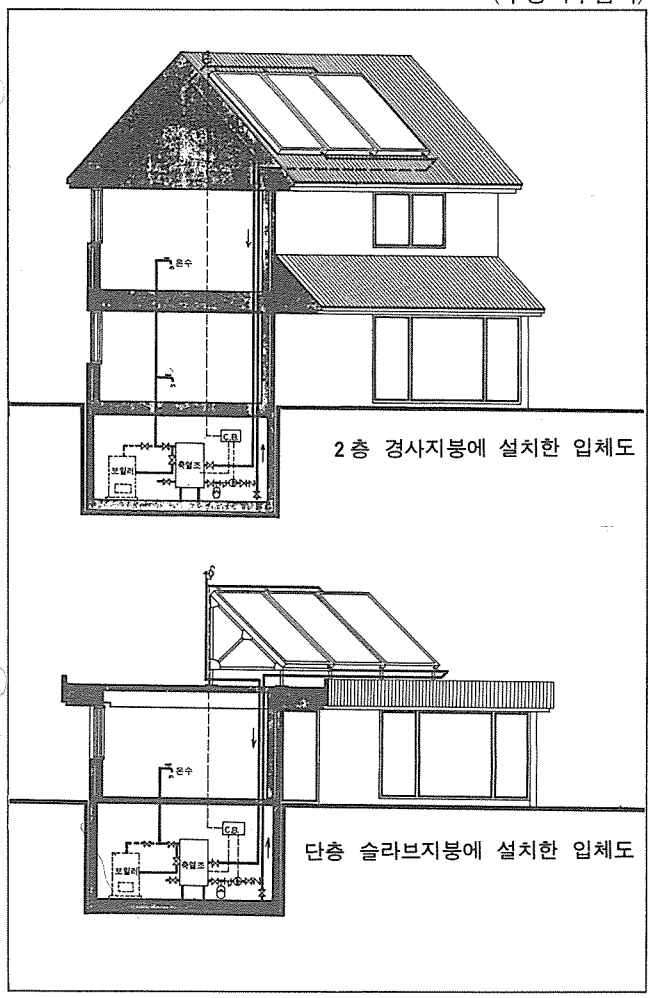

- 설치와 조작이 간편하다.
- 이용효율이 높다－유류절약
-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설치시 유의사항

- 설 치 장 소 : 남향면에 장애물이 없고 일사조건이 양호한 곳
- 설 치 방 향 : 남서30°~남동20°
- 설 치 경 사 각 : 20°~50°
- 기 자 재 선 택 : 모든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K.S품을 사용
- 시공업체선정 : 태양열집열기 시공업 지정을 받은 업체로서 아프터써비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신용있는 업체

□ 운전 및 작동요령

1. 태양열 시스템 압력계의 압력(1.0~1.5kg/cm²)이 적정한가 확인한다.
2. 태양열 시스템의 압력이 떨어졌을 경우 우선 누수되는 부분이 없나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부동액 주입구 밸브를 열고 물이나 부동액을 시스템 압력이 1.0~1.5kg/cm²가 될 때까지 주입하고 부동액 주입구 밸브를 잠근다.
3. 자동제어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올린다.
4. 태양열 집열 순환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자동제어장치의 온도차에 의해 집열순환펌프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5. 태양열 시스템 작동중에 전원표시등과 펌프작동 표시등이 켜져 있는가를 확인한다.

※ 태양열 집열기는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집열효율의 성능저하 현상이 없도록 한다.

□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의 원리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은 건물방향을 남향으로 하여

첫째, 건물의 남측면에 2중투과체(2중유리등)을 설치하여 많은 양의 태양빛을 실내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둘째, 건물의 벽면 또는 바닥(콘크리트 등 집열효과가 좋은 건축재료)표면에 태양빛을 모두 흡수저장할 수 있는 무광택의 어두운 색으로 도장함으로써 복사대류현상에 의해 난방에너지를 단열주택에 비하여 30~40%를 절약할 수 있고,

셋째, 차양을 설치하여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시키고 창문을 개폐하여 자연통풍 시킴으로써 일반주택보다도 오히려 더 시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의 종류

자연형 태양열 주택은 크게 직접획득형과 간접획득형으로 나누며 그 대표적인 주택의 예는 아래와 같읍니다.

- 직접획득형

직접획득형이라 함은 남향창을 통하여 겨울철에 많은 양의 햇볕이 실내에 들 수 있도록 하여 이로서 얻어진 태양에너지를 바닥이나 실내벽에 저장 자연순환 되도록 한 것입니다.

- 간접획득형

간접획득형이라 함은 벽을 투과체 바로 뒷편에 설치하여 전도, 복사, 대류와 같은 자연열전달 현상에 의해 실내난방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자연형 태양열 주택 설계시 권장 및 주의사항

적 요	권장 및 주의사항
집 열 창	● 직접획득 : 개폐식 창, 창틀 : 단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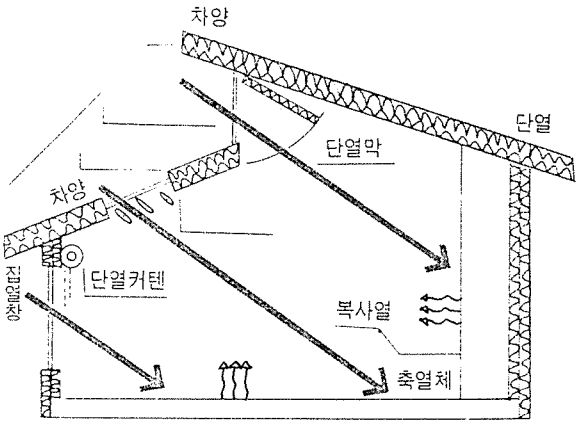

● 직접획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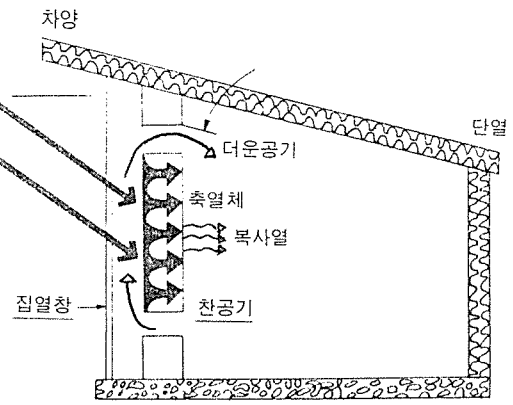

● 간접획득형

	창틀(목재·플라스틱 등) ● 간접획득 : 개폐식 창, 유리 : 이중유리
간접획득형 축열벽과 집열창의 거리	약 150㎜
창	● 이중창(단열창틀) 혹은 이중유리 단창+단열덧문 ● 환기, 하절기 자연냉방 및 채광을 위하여 각방마다 집열창 이외의 창을 설치할 것. ● 간접획득형 집열벽 내의 창크기 : 난방면적의 약 10%
외부로의 출입문	● 이중문
명창	● 북쪽(뒷쪽)에 위치한 방을 위한 명창은 안쪽에 단열덧문을 설치할 것.
통풍구	● 통풍구 총면적은 축열벽 총면적의 2～3% ● 상부의 통풍구에 가동성 바람막이 설치
단열덧문(커텐)	● 추운기후(1월 외기 최저 평균온도 0℃이하 설치 ● 온화한 기후(1월 외기 최저 평균온도 0℃이상) : 선택권을 둠.
직접획득형의 축열체 표면마감 및 색채	● 몰탈마감+어두운 색 도장(예 : 검은색, 짙은 갈색) 혹은 몰탈마감+세라믹타일 종류(짙은 색)
단열기준 (예)	● 바닥 : 질석 콘크리트 100㎜ ● 외벽 : 스치러폴 혹은 그라스울 100㎜ ● 천정 : 그라스울 100㎜
보조난방 열원 용량	● 난방부하의 100%

차양

● 남쪽 집열창에 적정크기의 차양 필히 설치할 것.

1. 집열창 각부위 칫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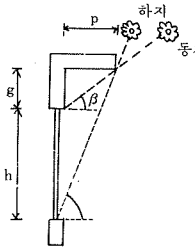

h : 창의 높이
g : 창에서 수평루버까지의 거리
p : 수평루버 돌출길이
$\bar{\Omega}$: 하지때 남중시 태양고도
$\bar{\beta}$: 동지때 남중시 태양고도
이때 p와 g를 각각 h와의 비(Ratio)로 표시하면

$\bar{p}$(돌출비) $= \frac{p}{h}$ 이고,

$\bar{g}$(분리비) $= \frac{g}{h}$ 이다.

2. 차양 길이비

위도	차양돌출길이비(p)	창윗틀에서차양까지길이비(g)
37°34′(서 울)	0.560	0.489
36°18′(대 전)	0.502	0.432
35°53′(대 구)	0.502	0.466
35°49′(전 주)	0.500	0.465
35°08′(광 주)	0.477	0.454
35°06′(부 산)	0.476	0.454
34°08′(여 수)	0.464	0.448
33°14′(서귀포)	0.415	0.422

차양돌출길이(p) $= \bar{p} \times$ 창 높이(h)
창 윗틀에서 차양까지 길이(g) $= g \times$ 창 높이(h)

※ 자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